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

제정 1998년 5월 8일
개정 2021년 8월 24일

EL302 : 2021
세탁용 세제

환경부

제 정 자: 환경부장관
제 정: 1998년 5월 8일 환경부고시 제1998-46호
최 종 개 정: 2021년 8월 24일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환경 관련 기준 3
4.1 사용 금지 원료 3
4.2 환경점수(Xn) 기준 4
4.3 포장재 평가지수 4
4.4 1차 포장재 5
5 품질 관련 기준 5
6 소비자 정보 5
7 검증방법 6
8 시험방법 6
9 인증사유 9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302. 분말 세탁용 세제【EL302-1998/9/2012-36】는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302:2021**

세탁용 세제

Laundry Deterg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가정용 세탁기에 사용하는 분말 세탁용과 세제의 유효성분을 함침·고착시킨 시트형 및 액상 세탁용 세제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

KS C 9608, 전기 세탁기

KS C IEC 60456 가정용 전기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KS K 0905, 염색 견뢰도 시험용 첨부포

KS K ISO 105-C06,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제C06부: 가정용 및 상업용 세탁에 대한 견뢰도

KS M 2709, 합성세제 시험 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OECD 107, Partition Coefficient (n-octanol/water): Shake Flask Method

OECD 117, Partition Coefficient (n-octanol/water), HPLC Method

OECD 305, Bioaccumulation in Fish: Aqueous and Dietary Exposur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분말 세탁세제

분말·소립상으로 제조한 세탁용 세제. 세제의 유효성분을 함침·고착시킨 시트형 세제를 포함한다.

3.2 액상 세탁세제

액상으로 제조한 세탁용 세제

3.3 생물농축성(bioconcentration)

생물의 조직 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환경매체 중에서의 농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3.4 생물농축계수(BCF, bioconcentration factor)

수중생물의 생체조직 농도와 수중농도가 평행상태에 이르렀을 때 수중농도 대비 생체조직의 농도비

3.5 옥탄올-물 분배계수(logk_{ow}, n-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섞이지 않는 두 용매인 물과 옥탄올(octanol)에 화합물을 녹였을 때 물과 옥탄올 층에 녹아 있는 화합물 농도비를 분배계수로 나타낸 것

3.6 기능단위(g/wash)

제품이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성능)를 정량화한 것. 이 기준에서는 교반식 세탁기용 세제는 세탁할 때 사용하는 물 100 L를 기준으로 사용되는 세제의 양, 드럼식 세탁기용 세제는 세탁물 10 kg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세제의 양으로 정한다.

비고 세제 종류별 기능단위 값은 세제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표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3.7 교반식 세탁기

세탁조의 바닥면(또는 중앙)에 장착된 날개의 교반운동과 세제의 기능을 이용하여 세탁하는 방식의 세탁기

3.8 드럼식 세탁기

수평으로 설치된 드럼 구조의 세탁조를 세탁물이 낙하될 때의 힘과 세제의 기능을 이용하여 세탁하는 방식의 세탁기

3.9 총 화학물질

기능단위 중 수분(결합수 포함)을 제외한 모든 구성 물질의 사용량 총합(g/wash)

3.10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기능단위 중 호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는 모든 구성 물질의 사용량 총합(g/wash)

3.11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기능단위 중 혐기성 상태에서 생분해가 되지 않는 모든 구성 물질의 사용량 총합(g/wash)

3.12 한계희석량(CDV_{tox})

기능단위 중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환경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

까지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의 양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값(L/wash)

3.13 1차 포장재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3.14 2차 포장재

1차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묶음 포장할 때 사용하는 끈, 골판지, 운반용 상자 등의 포장재

4 환경 관련 기준

분말 세탁용 세제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탁용 세제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사용 금지 원료	▪ 유해물질 사용 감소
유통·사용·소비	▪ 환경점수(X_n) 기준	▪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 포장재 평가지수	▪ 폐기물 발생 감소
폐기	-	-
재활용	▪ 1차 포장재	▪ 재활용성 향상

4.1 사용 금지 원료

제품의 구성 원료로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 alkylphenol ethoxylates) 및 알킬페놀유도체(APDs, alkylphenol derivatives)

b) 인산염 및 붕산(boric acid)

보기 인산염: phosphate, phosphonate

c) 니트로계 향료(nitromusks) 및 다환계 향료(polycyclic musks)

비고 이 기준에서는 다음의 향료를 니트로계 및 다환계 향료로 잠정 규정한다.

표 2 니트로계 및 다환계 향료 화합물

CAS No.	물질명	CAS No.	물질명
81-15-2	musk xylene	1506-02-1, 21145-77-7	AHTN
83-66-9	musk ambrette	114109-62-5, 114109-63-6, 1222-05-5, 78448-48-3, 78448-49-4	HHCB
116-66-5	moskene		
145-39-1	musk tibetine		
81-14-1	musk ketone		

d)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표 3**의 H코드로 분류되는 한계농도 이상의 화학물질

비고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Part 3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표 3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H 코드	설명	한계농도[a] [질량분율 (%)]
H334	may cause allergy or asthma symptoms or breathing difficulties if inhaled	0.1
H317	may cause allergic skin reaction	0.1
H400	very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0.25
H410	very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0.25
H411	toxic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2.5
H412	harmful to aquatic life with long-lasting effects	25
[a] 액상 세탁세제의 경우 수분을 제외한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유효물질량(AC) 중의 농도로 적용한다.		

e) 생물농축계수(BCF)가 100 이상이거나, 옥탄올-물 분배계수($\log K_{ow}$)가 3 이상인 방부제 및 염료

4.2 환경점수(Xn) 기준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환경점수(X_n) 총합 및 각 기준항목별 환경점수(X_n) 값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세탁세제의 환경점수(Xn) 산정표

기준항목			X_n 값 한계 기준	점수계산 체계	
				계산식	가중치
분말 세탁 세제		1. 총 화학물질	70 이하	$-1.08X_1+79.54$	3.5
		2.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30 이하	$-0.27X_2+11.83$	1.5
		3.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65 이하	$-0.73X_3+49.67$	3
		4. 한계희석량(CDV_{tox})	1 300 이하	$-(7\times10^{-3})X_4+12.37$	7
		총합	80점 이상		
액상 세탁 세제	약알칼리성 세제	1. 총 화학물질	50 이하	$-0.5X_1+27$	3.5
		2.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6 이하	$-2.3X_2+13$	1.5
		3.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35 이하	$-0.38X_3+15$	3
		4. 한계희석량(CDV_{tox})	2 000 이하	$-7\times10^{-3}X_4+19$	7
		총합	100 점 이상		
	중성 세제	1. 총 화학물질	30 이하	$-0.25X_1+11.2$	3.5
		2.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3 이하	$-X_2+6.4$	1.5
		3.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20 이하	$-0.4X_3+9.6$	3
		4. 한계희석량(CDV_{tox})	1 500 이하	$-3.6\times10^{-3}X_4+7.3$	7
		총합	60 점 이상		
비고 액상 세탁세제의 액성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방법의 액성 표시기준을 따른다.					

4.3 포장재 평가지수

제품의 1차 포장재 평가지수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1차 포장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차 포장재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품에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비닐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5 1차 포장재 평가지수

구분	분말 세탁세제	액상 세탁세제
1차 포장재 평가지수	8 이하	11 이하

포장재 평가지수(g/wash) = $\frac{A-B}{C} \times D$

여기서, A: 포장재 전체 질량(g)
B: 포장재 중 폐재 사용 질량(g)
C: 전체 제품 질량(g)
D: 기능단위 수(g/wash)

4.4 1차 포장재

제품에 사용되는 1차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우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마개 및 잡자재에 금속스프링(펌프) 사용으로 인한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품질 관련 기준

a)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확인 신고를 한 것이어야 한다.

b) 제품의 세척력은 지표세제의 세척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a)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b) 제품에는 표준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도구 또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고 계량컵이나 용기 뚜껑을 계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c) 표준사용량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의미를 포함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준량 사용방법: 세탁물 질량 또는 물 사용량 환산방법, 세제 계량방법 등

2) 표준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 시 세척력이 증가하지 않으며, 수질오염은 증가한다는 내용

그림 1 표준사용량 표시 예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a)~d)**	제출 서류 확인
		e)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2		제출 서류 확인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4.2		**8.4**에 따른 제출 서류
	4.3~4.4		제출 서류 확인
품질 관련 기준	**a)**		제출 서류 확인
	b)		**8.1**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비고 액상 세탁세제의 경우 세척력 시험을 위하여 시료 세제에 사용된 형광증백제 및 효소를 생산 현장에서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함께 의뢰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세척력 평가방법

본 평가방법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세부 사항은 KS M 2709 8.1을 따른다.

8.2.1 개요

시험포를 시료세제로 세척하였을 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반사율 또는 광전색채계로 측정한 백색도에 따라 지표세제 대비 시료세제의 세척력을 평가한다. 다만,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광광도계로 측정한 결과를 우선으로 한다.

8.2.2 장치 및 재료

장치 및 재료는 다음과 같다.

a) 시험포(Test fabrics)

1) KS C 9608에 따른 표준 오염포

비고 Swissatest Testmaterialien AG의 Swissatest 124를 사용하여도 좋다.

2) 수량: 1회 당 5 cm × 5 cm 크기의 시험포 48매 준비

b) 세척력 시험기

1) 교반식 세탁기용: KS M 2709, 8.1.3에 따른 Terg-O-Tometer

2) 드럼식 세탁기용: KS K ISO 105-C06, **4.1**에 따른 시험장치(Launder-Ometer). 다만, 세척력 시험 시 스테인리스 구슬은 사용하지 않는다.

c) 지표세제: KS M 2709, **8.1.4**에 따라 세척력 판정용 지표세제를 준비한다.

1) 액상 세탁세제용: 약알칼리성 2종을 따른다. 다만, 시료 세제의 구성성분 중 형광증백제와 효소가 있는 경우 지표세제에도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 양을 함께 조제하여 사용한다.

2) 분말 세탁세제용: 약알칼리성 1종을 따른다.

d) 사용수 및 시료 용액: KS M 2709, **8.1.4**에 따른 '사용수' 및 '시료 용액'

8.2.3 세탁 절차

8.2.2 a)에서 정한 시험포 총 48매를 8매씩 6개조(지표세제 3개조, 시료세제 3개조)로 분류하고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세척: **표 7**의 지표세제 및 시료세제를 시험포 6개조(지표세제 3개조, 시료세제 3개조)에 대하여 **표 8**의 조건으로 각 1회씩 세척한다.

비고 세척력 판정용 지표세제 용액과 시험포 질량비는 100:1로 한다. 다만, 시험포 질량이 부족할 경우 KS K 0905에서 정한 백면포를 사용하여 질량비를 조정할 수 있다.

b) 헹굼: 세척이 끝난 시험포를 모아 함수율이 200 % 이하가 되도록 가볍게 손으로 짜서 세척력 시험기에 넣어 **표 8**의 헹굼조건에 따라 1회 헹군다. 헹굼이 끝나면 이 조작을 1회 더 반복한다.

c) 건조: 헹굼이 완료된 시험포를 손으로 가볍게 짠 후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자연 건조한다. KS K 0905에 규정된 백면포 또는 동등한 수준의 깨끗한 면포 사이에 건조된 시험포를 놓고 평탄하게 되도록 다림질하여 세척력 판정에 사용한다.

표 7 지표세제 및 시료세제 사용량

구분	교반식 세탁기용 세제	드럼식 세탁기용 세제
지표세제	1.33 g/L	1.75 g/L × 0.3
시료세제	제품 표시 표준사용량	$\frac{\text{표준사용량(g : 제품 표시, 용량 3 kg 이하)}}{18} \times 0.3$

표 8 세척 및 헹굼 시험 조건

구분	물의 양 [L]	동작시간 [분]		회전속도 [r/min]	세척온도 [℃]
		세척	헹굼		
교반세탁기용 세제	1	10	3	100±5	25±2
드럼세탁기용 세제	0.3	30	10	40±2	25±2

8.2.4 세척력 평가

세척력은 분광광도계 또는 광전색채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8.2.4.1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세척력 평가

아래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KS C IEC 60456에 따르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KS C IEC 60456 **8.3.3**에 따라 측정하고 KS C IEC 60456의 **9.2**에 따라 평가한다.

a) KS C IEC 60456에서 "시험용 세탁기(또는 시험용 기기)"는 "시료 세제", "기준 기계"는 "지표 세제", "시험 가동의 수"는 "시험 횟수"로 바꿔 적용하며 "시험 시리즈"는 무시한다.

b) KS C IEC 60456, 9.2에서 시료세제와 지표세제 각각에 대하여 '표준 시험포(오염포)'는 8매, '시험횟수(시험 가동 또는 시험 사이클)'는 3회 및 오염 유형은 1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비고 이 기준에 따라 KS C IEC 60456, 9.25에서 $\overline{X_i} = C_k$이다.

d) 세척률은 KS C IEC 60456, **9.2**, **e)**의 계산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8.2.4.2 광전색채계를 이용한 세척력 평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백색도를 측정하여 세척력을 평가한다.

a) 시험포에 대한 백색도는 시험포 표면색에 대하여 광전 색채계를 이용하여 L, a, b 값을 측정한다.

비고 백색도 측정 광원은 CIE 표준광인 C2와 동등한 광원을 사용한다.

b) L, a, b 값을 측정할 때 해당 시험포의 앞면과 뒷면의 중앙 부분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다음의 식에 따라 백색도를 산출하며, 그 값들의 평균을 해당 시험포의 백색도로 한다

백색도(W) = $100 - \sqrt{(100-\mathrm{L})^2 + (\mathrm{a})^2 + (\mathrm{b})^2}$

c) **8.2.3**에서 정한 세탁 조작이 끝난 총 48매의 시험포의 백색도를 산출한다.

d) 세척률 계산: 8.2.2과 8.2.4 **a)**에 따라 측정된 총 48매의 시험포 백색도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험포에 대한 세척률을 계산한다. 이때 시료세제의 세척력을 지표세제 대비 동등 이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t 검정에 따른 유의성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척률(%) = $\dfrac{\mathrm{W_s} - \mathrm{W_b}}{\mathrm{W_o} - \mathrm{W_b}} \times 100$

여기서, W_o: 오염 전 면포의 백색도
W_b: 세척 전 시험포의 백색도
W_s: 세척 후 시험포의 백색도

8.2.5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시험 방법 및 참조규격

b) 지표세제를 제조할 때 사용한 원료에 대한 상세 사항

c) 시험 개별 데이터 및 표준 편차

8.3 사용 금지 원료

8.3.1 생물농축계수(BCF)

OECD 305에 따라 시험한다.

8.3.2 옥탄올-물 분배계수(logK_{ow})

OECD 107 또는 OECD 117에 따라 시험한다.

8.4 환경점수(Xn) 기준

EM102. 세제류의 수질오염영향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a]	에너지 절약[b]	지구 환경오염 감소[c]	지역 환경오염 감소[d]	유해물질 감소[e]	생활 환경오염 감소[f]	소음·진동 감소[g]
해당 여부	●			●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할 때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 등을 추가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